

위험관리로서의 보험

현재 일부 기업보험은 합리적인 분석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金融機關의 擔保設定에 따라 준의무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이나 요청에 의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자체에서 보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번 담보설정이나 감정평가 등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갱신 계약시 담보설정 해지나 재감정을 하지 않고서는 종전 목록표 금액으로 갱신 계약을 하고 있어, 기계매각 및 대체수리, 보수, 감가상각, 물가상승율 등이 고려되지 않아 罷災時 보험금 수령에 있어 超過保險 및 比例補償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구축물(콘크리트 구축물 및 기초 공사비) 등도 금융기관의 담보설정용으로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부보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실존 위험을 파악, 이에 부합되는 보험종목 및 특약담보를 첨부하여 부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이 없는 곳에는 보험이 있을 수 없다는 통설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보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영업활동에서 어떠한 위험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가를 꼭넓게 연구하여 적정한 보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부보하고자 한다

면, 우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어떤 자산에 어떠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되는 보험종목(특약담보 첨부)을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보험에 가입된 물건은 발행된 증권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工程圖 및 地域(위치)에 부합되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조건이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가?
2. 보험가입금액이 조건에 맞게 책정되었나?
3. 자입 목적물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다?
4. 보험요율에 대한 引下要素가 없는가, 재검토(위험분리 및 공정구획 등).
5. 총 지불보험료가 제품생산 원가에 미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6. 기타 : E. M. L 및 L. O. L, 평가일부(자가위험 보유) 위험의 분산 및 노출위험의 회피.

위험의 유형

- 인위적 위험 : 화재, 폭발, 기계적 파손, 누출, 전기적 부하 등 과실에 의한 손실위험
- 자연적 위험 : 폭풍, 홍수, 지진, 분화, 우박, 지면침하 등과 같은 현상에 의한 손실위험
- 고의성 위험 : 파업, 분규, 태업, 난동, 폭동 등과 같은 종업원이나 시민의 고의적 손실위험
- 상기와 같은 위험들이 어떠한 財物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된 보험 종목(특약)을 선택 및 적정한 부보가액을 산정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할 것이다.

예 : 화재보험 - 時價(再調達價) × 1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기관기계보험 - 新調達價額

기업휴지보험 - 사업년도(1년)동안 발생하는 총 매출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이익 손실의 유형

○ 재물손실 : 기업의 물적 손실로서 건물, 기계 장치, 제품, 원자재, 동산으로서의 손실(화재, 기관기계, 동산종합보험)

○ 수익손실 : 생산(가동) 및 영업상의 장애에 의한 수익감소 또는 정지되는 손실(기업휴지 보험)

○ 배상책임손실 : 자산의 보유,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같은 기업활동의 결과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보상하여야 할 손실(배상책임보험)

손실의 평가

부보의 필요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재산, 수익 및 배상책임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있고(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 등) 그 손실량은 얼마인가의 빈도(Frequency Loss)와 심도(Severity Loss) 분석을 통한 위험측정으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예상 최대손실액은 얼마인가?
2. 특정 기간내에 어떠한 원인(risk)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사고가 예견되는가?
3. 극단적인 대손실을 제외한 각 손실의 평균치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4. 극단적인 대손실을 제외한 특정 기간내에 예상되는 총 손실액은 얼마인가?

즉, 화재로 인한 최대 종합 손실치는
가) 물질적 손실(직접손실)

나) 생산 및 매출손실(간접손실)

다) 제3자에게 배상할 신체적, 물질적 배상책임 등 3가지 합계액이 화재에 의한 총손실로서

이를 보험에서는 EML(Estimated Maximum Loss), MPL(Maximum Possible Loss), 또는 PML(Probable Maximum Loss) 등과 같은 용어로서 사용되며, 전자를 한 사고당 보상 최고 한도액이며, 후자를 최대 손해 추정치라고 말한다.

기업에서는 위와 같은 최대 종합 손실치(PML)를 파악함으로써 보험계약시 EML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BI(企業休止保險)

기업보험이 화재나 다른 위험(기계적 사고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된 때에는 수개월에 걸쳐 판매나 수입의 상실을 가져 올지로 모른다.

수입의 상실은 결과적으로 손실의 한 형태인 휴업보험으로 부보된다.

해당 재산에 대한 직접손해는 기본적인 보험으로 보상되나, 경과적 손해는 이러한 추가담보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보상받는다.

휴업보험은 때때로 Use and Occupancy라고 하는바, 이는 수입상실에서 오는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수입은 2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기업활동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계속해서 지출되는 경상비를 말한다.

이들의 형태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셈이나, 고객들의 요구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증기기관의 파손 또는 기타 중요한 기계에서 생기는 손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그러한 기계장치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보험에 통상 기업휴지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기업휴지보험을 기관기계보험의 특약으로 부보하게 된다.

BM(기관기계보험)

내연기관, 압축기, 엔진 전기장치, 공조기 및 로(爐)에서 발생되는 폭발이나 파열은 가끔 일

반인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막대한 손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관 및 기계의 폭발·파열의 원인은 그 성질상 기술적인 것이므로, 그 위험은 통상 보험에 가입 하려고 하는 자에게 경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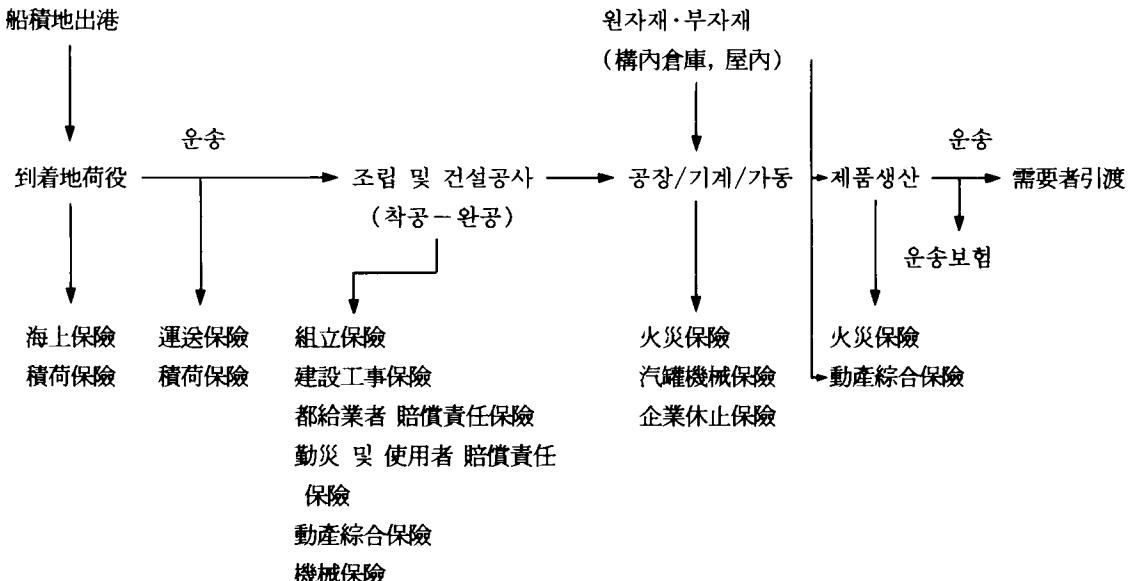
기관기계보험에 부보하는 목적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하

고 있는 파손된 기계를 대체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화재손해는 標準火災保險證券에서 지급되므로 이 보험계약에서는 직접 원인이 화재인 경우의 손해를 제외하고 있다.

화재손해도 면책으로 되어 있으나 특약으로 별도 부보할 수 있다.

〈 공장물건 각종 손해보험 〉



일반적 담보

- 화재보험 : 화재·낙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적 손해(추가위험은 별도 특약 참조)
- 조립보험 : 모든 위험에 의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생긴 직접 손해(단, 증권상의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설공사보험 : 토목 및 건축공사중 공사건물 등에 발생하는 손해
- 동산종합보험 : 모든 동산에 대해 보관, 사용, 휴대 또는 운송중을 불문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

- 제외동산(공장에 장치된 기계 : 리스(임대) 전문업자의 리스물건은 제외)
- 기업휴지보험 : 화재보험 증권에 담보(특약 포함)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매출액, 생산액 등) 감소분을 담보
- 기계보험 : 가동중이나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및 장치에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 운송보험, 적하보험 : 기계설비나 장치 등을 陸路 또는 海路를 통하여 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물적 손해를 담보.